

제316회 달성군의회 정례회

행정복지위원회

검 토 보 고 서

2024. 12. 10.(화)



행정복지위원회
전문위원 고종선

목 차

1. 2025년도 (재)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	1
2. 2024년도 (재)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	3
3.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	5
4.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	7
5.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	9
6.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	13
7.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15

2025년도 (재)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

1. 검토과정

- 의안번호: 제2572호
- 제 출 일: 2024년 11월 5일
- 제 출 자: 달성군수
- 회부일자: 2024년 12월 5일

2. 제안사유

- 대구광역시 달성군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2025년 (재)달성교육재단 출연 : 4,022백만 원
 - (재)달성교육재단 운영비 : 917백만 원
 - 내실 있는 재단 운영을 위한 경비
 - 인력운영비 546백만 원, 기본운영비 347백만 원, 자산취득비 24백만 원
 - (재)달성교육재단 사업비 : 3,105백만 원
 - 사업대상자 확대 및 새로운 프로그램 추가로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하여 지역인재 육성
 - 진로진학사업 : 150백만 원, 글로벌 교육지원 2,730백만 원, 4차 산업 교육지원사업 100백만 원 등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

5. 검토의견

- 본 (재)달성교육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은 군민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교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사업 추진과 내실있는 교육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, 재단 운영·관리비, 목적사업비 등 출연금을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군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(재)달성교육재단은 2000년 설립된 (재)달성장학재단이 단순 장학사업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닌 입시 등 교육지원사업을 더해 2023년 전환하여 출범하였습니다.

- 2025년 출연금은 4,022백만원으로 2023년 출연금 3,301백만원 대비 22% 가량(721백만원) 증액되었고, 전체 출연금의 약 23%(917백만원)를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, 사업비는 진로진학 및 영어학습 지원 150백만 원, 글로벌 교육지원 2,730백만 원, 4차 산업 교육지원사업 100백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3,105백만 원입니다.
출연금 예산요구액이 작년대비 증액된 이유는 1) 원어민 교육지원 (글로벌 교육지원) 확대, 글로벌 미래 인재 육성, 일타강사초청 강연 등의 신규사업 편성이 있습니다.

- 현재 지역에서 자란 학생들이 학군을 이유로 관내를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를 해결하기위해 작년 달성장학재단을 달성교육재단으로 전환 출범하였고, 관내 초·중·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내 기관, 기업, 대학 등과 연계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글로벌 미래인재육성 사업 등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신규사업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추진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, 출연금을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2024년도 (재)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

1. 검토과정

- 의안번호: 제2573호
- 제 출 일: 2024년 11월 5일
- 제 출 자: 달성군수
- 회부일자: 2024년 12월 5일

2. 제안사유

- 2024년도 (재)달성교육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추가(변경) 출연금액 : 100억 원
- 2024년 (재)달성교육재단 기본재산 적립: 100억 원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」

5. 검토의견

- 본 계획의 목적은 군민 맞춤형 교육 정책 수립으로 교육 분야 주민 만족도 향상 및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.
- 현재 (재)달성교육재단은 2024년 11월 기준 322억원 정도의 기본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

구 분	합 계	군출연	농협	대구은행	개인기탁
금 액	32,272	26,434	5,150	282	406
비 율	100	81.9	15.9	0.9	1.3

- 현 장학기금 보유액 322억 7천만원에서 본 출연금(100억)을 추가 편입하여 ①장학사업 확대, ②군민 교육수요에 부응을 위한 교육정책 및 사업 추진등을 위해 출연금 변경 계획안이 제안되었습니다.
- (재)달성교육재단은 2025년 ①장학금 지원 사업 확대, ②글로벌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, ③유명강사 초청강연 사업, ④미래/신산업 분야 체험기회 제공사업 등의 다양한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.
- 장학금 지급 확대 및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지원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 속, 우리 달성군 학생들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써, 본 출연금 변경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

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안

1. 검토과정

- 의안번호: 제2574호
- 제 출 일: 2024년 11월 5일
- 제 출 자: 달성군수
- 회부일자: 2024년 12월 5일

2. 제안사유

- 급증하는 주민들의 정원이용에 관한 수요를 충족하고 지방정원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시설관리·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시설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(안 제3조~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」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주민들의 정원 이용 수요에 대해 지방정원이 충분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효율적 시설관리·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.
- 정원은 조성·운영 주체,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고 있으며 각각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정의되고 있습니다. 이중 지방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·운영하는 정원을 뜻합니다.
- 기후변화 등에 따른 미래사회 대처를 위해 대구광역시는 정원문화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2021년 조례로 규정하였으며, 우리 군은 2023년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원문화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.
- 최근,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일대에 지방정원(세천늪 테마정원) 조성계획이 승인(2024년 10월 28일)됨에 따라 지방정원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함과 동시에 상위법령(수목원정원법)의 조례위임사항(제18조의5 정원의 입장료)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건은 상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,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.

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계획안

1. 검토과정

- 의안번호: 제2610호
- 제 출 일: 2024년 11월 27일
- 제 출 자: 달성군수
- 회부일자: 2024년 12월 5일

2. 제안사유

- 202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□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: 27,132천원

-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세제 개편,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·운영되는 기관으로,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.2/10,000을 출연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

5. 검토의견

- 본 계획안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 및 제152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출연금 편성을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.
-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「지방세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자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.2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며,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2023년도 보통세는 226,096,535천원으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27,132천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.
-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연구기관으로서 자치단체 의뢰과제를 수행하거나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교육 등을 맡고 있음.
- 본 계획안은, 법정의무경비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곳으로 필히 편성해야 합니다.
다만, 관내 타 자치구에 비해 많은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는 바,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연구결과, 공무원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..

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

1. 검토과정

- 의안번호: 제2575호
- 제 출 일: 2024년 11월 5일
- 제 출 자: 달성군수
- 회부일자: 2024년 12월 5일

2. 제안사유

○ 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 변경

-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가창 지역에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달성지역 내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, 다양한 연령대의 지역주민이 편리하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.
- 제311회 달성군의회에 「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」을 상정, 의결하였으나, 주민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가창면민복지회관 확장 건립 요구를 수용하여 가창면민복지회관의 시설, 연면적을 변경하고 총사업비를 증액하고자 함.

○ 남부 농기계임대사업장 확장이전 신축

- 달성군 내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로 인해 농기계 의존도가 증가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도 확대되었으나, 임대사업장 공간이 협소하여 수요 대응이 어려움.
- 이에 남부 농기계임대사업장을 확장이전하여 증가하는 농기계 임대수요를 감당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 변경 건

- 위 치: 가창면 냉천리 2-22번지
- 규 모: 부지면적 2,321㎡, 건물 연면적 3,288㎡ (기존 1,450㎡)
- 주요시설: 다목적체육관, 체력단련실, 스크린파크골프장, 지하주차장 등
- 총사업비: 125억 원 정도
-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
 - 2022. 09. : 가창면 변영회 복지회관 건립 건의
 - 2022. 10. : 사업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실시
 - 2023. 07. : 주민설명회 개최(3회)
 - 2024. 02. : 지하주차장, 다목적체육관 등의 추가 요청 반영
 - 2024. 07. : 변경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완료
 - 2025. 01. : 실시설계용역 착수
 - 2025. 12. : 착공(예정)
 - 2027. 06. : 준공(예정)

○ 남부 농기계임대사업장 확장이전 신축

- 위 치: 현풍읍 원교리 583-1번지 일원
- 규 모: 부지면적 5,390㎡, 연면적 997㎡
- 주요시설: 지상1층(농기계 수리 및 보관창고 771㎡, 사무실 113㎡
지상2층(직원 휴게실 113㎡)
실습교육장 300㎡, 농기계 외부 적재장 1,000㎡

- 총사업비: 35억 원 정도
-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
 - 2022. 09. : 남부 농기계임대사업장 이전 계획 수립
 - 2023. 06. :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 시행
 - 2024. 08. : 부지매입 완료
 - 2025. 04. :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
 - 2025. 11. : 준공
 - 2025. 12. : 임대사업장 이전 완료(예정)

4. 검토의견

-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(안)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.
- 가창면민복지회관 건립 변경 건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가창 지역에 복지회관을 건립하여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으며,
- 기존 안 1,450㎡에서 시설 배치에 대해 주민간담회를 거쳐 ①복지회관 연면적 확대, ②지하공간 활용, ③지하주차장 / 다목적체육시설추가 등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연면적 3,288㎡로 확대 및 주민 욕구가 반영된 시설을 배치하게 되면서 총 사업비가 125억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.
- 남부 농기계임대사업장 확장이전 신축 건은 관내 농업 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농기계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, 농기계 임대사업의 확대에 따른 임대사업장 공간을 확장 이전하기 위함이며, 총 사업비는 35억원 정도입니다.
- 이상 2건은 달성군 관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, 실 사용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서 필요하다 판단됩니다.

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

1. 검토과정

- 의안번호: 제2611호
- 제 출 일: 2024년 11월 27일
- 제 출 자: 달성군수
- 회부일자: 2024년 12월 5일

2. 제안사유

-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(대통령령)」 제7조(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) 제2호2에 “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” 이 신설됨에 따라,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, 사이버보안 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(안 제1조)
- 사이버보안 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(안 제2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개정된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 제7조제2의 2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.
- 사이버안보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 수행을 위한 개정사유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규정사항 신설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- 다만 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 대한 기관을 본 조례안을 통해 규정한 바, 추후 지정된 출자·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의 지도·감독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검토과정

- 의안번호: 제2579호
- 제출일: 2024년 11월 5일
- 제출자: 달성군수
- 회부일자: 2024년 12월 5일

2. 제안사유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규정」이 폐지된 바 이 규정과 연관된 불필요한 조항의 정비를 통해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조문 수정(안 제4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긴급복지지원법」, 「기초생활보장법」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규정」이 2024년 10월 폐지됨에 따라, 본 훈령을 준용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.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규정」의 전반적인 내용이 현행 법령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에 규정됨으로 인해 폐지되었습니다.

- 그에 따라 해당 조문을 준용하고 있던 조례의 조문 내용을 개정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.

- 다만, ① 본 조례 제4조제2항 조문 내용상 폐지된 훈령이 유지되고 있는 점, ② 관내 ‘긴급지원심의위원회’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도,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12조제4항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」 조문을 따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.